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정 2024. 7.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체계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윤리경영”이란 공단이 윤리적·사회적·법적 책임까지 고려하여 운영하는 경영방식으로 경영활동 과정에서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국회, 정부, 고객, 지역주민 등 공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윤리위험”이란 공단이 경영활동과 관련한 법령, 지침 등을 위반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예견되는 상황 또는 법률·감독상 제재를 받거나 중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윤리위반 행위”란 공단에서 금지한 행위로서 부패행위,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 인권침해 행위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포함한 윤리 관련 규정·규범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 “윤리경영 최고책임자”란 공단을 대표하여 윤리경영의 운영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 “윤리경영책임관”이란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이란 반부패·청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감사실장을 말한다.
- “기금운용관련자”란 자금운용관리단과 리스크법무실에 속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단 임직원에 적용하며, 윤리경영 이행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효과적인 윤리경영 추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경영 정책 및 환경조성

제4조(일반원칙) ① 공단은 경쟁적 이해관계 또는 단기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윤리위반 행위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중장기적인 전략 및 목표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윤리경영이 강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의 임직원은 높은 윤리의식과 합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되는 제반 법령과 관련 규정 및 본 지침을 준수하고 인권 존중 및 윤리적 사고에 기초하여 판단하며 행동하여야 한다.

제5조(윤리규범) ① 공단은 경영활동에서 윤리경영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TP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등(이하 ‘윤리규범’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공단은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 기준으로서 윤리헌장을 둔다.

③ 공단은 윤리헌장의 실천력 강화를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두며,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의 제정 및 개폐 시 윤리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의지표명) 윤리경영 최고책임자는 윤리경영을 충분히 이해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한다.

제7조(윤리경영 준수 의무 및 책임) 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무지에 의한 위반도 제재 대상이 됨을 알고 위반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와 윤리규범의 준수를 위하여 윤리경영 최고책임자는 임직원으로부터 하여금 윤리경영 실천서약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위해 임직원, 제3자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바람직한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8조(임직원의 의무) ① 임직원은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9조(품위유지) 임직원은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단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임직원의 상호존중) ①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③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 혹은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 간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내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보 관리 및 보호)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공단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교직원 존중) ① 임직원은 공단의 고객인 교직원을 존중하고, 교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교직원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② 임직원은 교직원의 만족을 위해 양질의 업무수행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③ 임직원은 교직원의 자산, 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교직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교직원이 알아야 하거나 교직원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기금운용관련자의 윤리행동 기본자세

제14조(주의 의무) ① 기금운용관련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련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기금운용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기밀 준수) ① 기금운용관련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가격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기금운용관련자는 자신의 지위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기금에 손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친·인척 등 타인에게 기밀을 제공함으로써 기금의 이익에 반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

③ 기금운용관련자는 타 부서로의 전보 또는 퇴사 후에도 직무수행 시 취득한 기밀을 기금의 이익에 반하여 누설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준수) 기금운용관련자는 해당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여부 점검) 기금운용관련자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해당 강령 및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를 점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점검을 갈음한 것

으로 간주한다.

제5장 윤리경영 관련 위원회

제1절 윤리경영위원회

제18조(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공단은 윤리경영의 체계적 추진과 윤리경영 실천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경영 최고책임자인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경영관리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윤리경영책임관을 포함한 본부 소속 실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윤리경영 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4. 임직원의 행동강령 실천 및 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윤리경영 실천·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업무협의를 상정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안전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2조(서면결의)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할 안전으로서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이가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의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의결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경영위원회

제24조(인권경영위원회의 설치)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 실천·점검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접수 사건의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인권경영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윤리경영 운영

제26조(윤리경영 기본계획 수립) 공단은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윤리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27조(윤리문화 개선) 공단은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윤리위험 예방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전개한다.

제28조(포상 및 징계) ① 공단은 윤리경영 문화 확산 및 발전에 기여한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윤리위반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상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청렴마일리지 운영) 반부패 청렴활동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성과보상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제30조(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사장은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임원) 임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과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청렴서약 의무) 이사장은 임직원 신규채용 시 [별표 제5호]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관련자는 2부를 작성·서명하여 1부를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1부를 본인이 보관한다.

제32조(윤리경영 홈페이지) ① 공단은 윤리경영의 전사적 확산과 지속적 실천 의지와 그 성과를 대외에 알리기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윤리경영 파트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 홈페이지에는 기관장 메시지, 윤리규범, 윤리경영 추진조직, 윤리경영 알림판, 부패행위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윤리경영책임관) ① 이사장은 이 지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윤리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윤리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윤리 관련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지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4조(지침의 보완)** ① 공단은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이 지침을 지속적으로 변경·보완한다.
-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한 윤리규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청렴 서약서

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임직원으로서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 하나, 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 등도 받지 않는다.
- ◆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한다.
-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공정하게 처리하며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임직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공단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직 위 :

성 명 :

(서명)